



2016년 강진읍 종합감사 결과

- 감사기간 : 2016. 11. 3.(목) ~ 11. 7.(월) / 3일간
- 대상기간 : 2014. 11. 1. ~ 2016. 10. 31. / 2년간
- 지적사항 : 19건
 - 행정상 조치 : 시정 5건, 주의 14건
 - 재정상 조치 : 1,125천 원(회수 835, 부과290)



강진읍 종합감사 결과

I 총 평

1. 일반행정 분야

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 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위원회 심의를 소홀히 하였음
-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기회를 월 1회 개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 개최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2. 외계분야

- 회계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연찬하여 처리 하였어야 하나, 공사계약시에는 강진군 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49호(공사·용역)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관외출장 여비 지급시에는 2일 이상 출장 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점 이상을 제출받아 지출 했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회계업무담당자에 대한 업무 연찬이 필요하였음.

3. 농업 분야

-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완료 되었음에도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에도 매년 자체점검 대장으로 갈음하는 등 체계적인 보조지원 사업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쌀·밭 직불사업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 접수를 한 후 경영주 이외의 농업인과 종사기간 등을 확인하고 담당자 확인필 등 업무 처리에 신중을 기하여 함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

4. 건설 분야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현장여건을 면밀히 조사고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현장과 부합되는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건설공사 감독자의 감독의무)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감독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지방규정에 의하여 견실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의하여 적정 시공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함.

5. 사외복지 분야

-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 중 계약기간, 활동장소 및 업무내용·활동지급방법 등을 기재하지 않았음이 발견 되었으며, 또한 장애인의 재진단 예정일이 지난 현재까지 장애 재판정을 받도록 안내하지 않는 등 업무의 소홀함이 있음에 따라 담당자의 업무연찬이 필요함.

Ⅲ 감사 결과

1. 처분요구 실적 : 19건

- 행정상 조치 : 시정 5건, 주의 14건
- 재정상 조치 : 1,125천 원(회수 835, 부과 290)

2. 지적사항 목록

(단위 : 건, 천 원)

연번	분 야	건 명	행정상 조치 (건)		재정상 조치 (천 원)			기타
			시정	주의	계	회수	부과	
계		19건	5	14	1,125	835	290	0
1	회계분야	예산지출 품의서 적용 부적정		○				
2	“	관외출장 여비지급 증빙자료 누락		○				
3	“	지역개발공채 매입기준 적용 소홀	○		65		65	
4	“	예산집행 관련 회계서류 작성 소홀		○				
5	“	이장단 선진지 견학 계약 부적정		○				
6	일반행정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빈집) 건축물대장 미말소	○					
7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부적정		○				
8	“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불입 부적정		○				
9	“	민방위 장비 관리 부적정		○				
10	“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미부과	○				225	
11	“	수입증지 수수료 지연 입금		○				
12	복지분야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사업 협약서 내용작성 소홀		○				
13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급여신청수 구비서류 장구 부적정		○				
14	“	장애등급 재판정 시기 도래자 조치 소홀	○					
15	건설분야	△△읍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과다 집행	○			835		
16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소홀		○				
17	농업분야	농업인 보조지원 장비관리 업무 소홀		○				
18	“	쌀·밭직불제 신청서 접수관리 업무 소홀		○				
19	“	시설원에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대상 농가홍보 미흡		○				

VI 지적사항 요약

1. 예산지출 품의서 적용 부적정

- △△읍에서는 '15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5건의 공사계약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49호(공사·용역)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일반지출결의서로 지출하는 등 회계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음.

2. 관외출장 여비지급 증빙자료 누락

- 관외 출장을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출장복명서 또는 증빙할 수 있는 개인신용카드 영수증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여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6건에 대한 증빙할 자료가 없이 지출하였음.

3. 지역개발공채 매입기준 적용 소홀

- 2015년 6월 24일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건설장비 임차비를 집행 하면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토록 했었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비를 지출하였음.

4. 예산집행 관련 회계서류 작성 소홀

-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9건에 대한 예산을 지출 하면서 목록에 명시된 품목에 대한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회계담당자가 당연히 행해야 할 업무를 소홀히 함.

5. 이장단 선진지 견학 계약 부적정

- 버스 임차계약을 체결하기 이해서는 먼저 관광진흥법 제9조에 의한 차량이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었는지 여부와 보험기간 도과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증서와 차량등록증 등을 제출토록 하여 이를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

6.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빈집) 건축물대장 미 말소

- 농촌지역의 빈집정비로 주거환경 향상 및 마을경관을 개선하여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7건의 빈집을 정비완료 하였으면 소유자로부터 건축물 관리대장을 말소토록 지도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

7.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부적정

- 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연간 운영계획 위원회 심의를 미 이행하였으며,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 이행 하였음.

8.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불입 부적정

-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공급대금을 징수 할 때에는 징수부에 대장을 매일 정리하여 기록유지하고 익일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읍에서는 당일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익일 불입하고 있으나 고지서로 불입하는 경우 임의로 1개월 가량을 기한을 주고 판매하는 등 조례에서 규정하는 판매규정을 위반 함.

9. 민방위 장비 관리 부적정

- 휴대용 조명등 및 전자메가폰, 교통신호봉 등의 건전지는 자연 방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리 보관하고, 건전지 접촉면 등 금속 부분의 산화(부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전자메가폰의 건전지를 분리하지 않았고, 충전식 건전지를 충전하지 않아 비상사태 발생시 긴급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10.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미 부과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5천 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행정착오로 2014년부터 2016년 감사일 현재까지 총 45건의 225,000원의 수수료를 미 부과하였음.

11. 수입증지 수수료 지연 입금

- 「강진군 수입증지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5년 15,793건에 12,499,100원을 최저 1일부터 최대 6일간, 2016년도 18,562건 14,149,500원을 최저 1일부터 최대 4일간까지 수입금을 지연 불입하였음.

12.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사업 협약서 내용작성 소홀

-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 중 계약기간, 활동장소 및 업무내용, 활동비 지급방법 등을 미 기재하여 업무를 처리함.

1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급여신청서 구비서류 징구 부적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복지대상자 장애급여 지원신청서에 의하면 “구비서류 중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는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징구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28건의 신청서를 받아 접수하면서 7건에 대해 사망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징구하여 부적정 처리함

14. 장애등급 재판정 시기 도래자 조치 소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 확인) 제2항,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에 의거 장애유형별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장애등급재판정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의 재판정 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통보 하고, 소정기일 내에 장애진단을 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장애인의 재진단 예정일이 지난 현재까지 장애 재판정을 받도록 안내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함.

15. △△읍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과다 집행

- 공사의 설계도서에 콘크리트 포장 시공을 위하여 합판거푸집 (6회) 55m²가 반영되어 있으나, 시공시 합판거푸집을 34m²만 사용하여 시공하였고, 배수공에 PVC배수파이프(D100) 20m가 반영 되었으나,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시정(변경) 하지 않고 소홀하게 공사 추진하여 공사비 835천 원을 과다 집행하였음.

16.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소홀

- △△읍 △△마을 안길 포장외 3개소 공사를 추진하면서 업체에서 제출한 1인 견적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지 않았고, 특히 도면 및 산출근거 등이 없어 1인 견적서의 수량 및 견적 가격이 적정한지 알 수 없는데도 검토 없이 1인 견적금액으로 계약체결 하였으며, 또한 감독공무원 미지정, 부적합 서식(물품 구입) 사용, 청구서 미 접수 등 소홀하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였음.

17. 농업인 보조지원 장비관리 업무 소홀

- △△읍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였던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7건에 대해 사업이 완료되어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함에도 매년 자체점검 대장으로 갈음하는 등 체계적인 보조지원 사업관리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8. 쌀·밭 직불제 신청서 접수관리 업무 소홀

- 2016년도 쌀·밭 직불사업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 접수를 한 후 경영주 이외의 농업인과 종사기간 등을 확인하고 담당자 확인필 등 업무처리에 신중을 다하여야 함에도 신청서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9. 시설원예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대상 농가홍보 미흡

- △△군 △△△△△과 시설원예사업 시행지침서 통보 및 사업 신청서제출에 따른 공문접수 후 원예시설 농가에 시행공문전달 등 시행지침 및 사업신청 홍보에 철저를 다하여야 함에도 시설원예사업 시행지침서와 사업신청 홍보에 대한 관련서류 편철 등 업무관리에 소홀히 하였음.